

October 15, 2026

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

I.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

1. 사안의 개요

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년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·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관할 세무서장은 그로부터 3 년 이상이 지난 2023 년 3 월 원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수보하고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.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. 5. 31.을 50 여 일 앞둔 2023. 4. 6.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·고지하였습니다. 원고는 2023. 4. 12.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달받았습니다.

본 사안에서는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져 동시에 송달된 경우,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, 그리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.

2. BKL 의 대응

BKL 은 원고를 대리하여,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,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동시에 송달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의 '미리'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판결문에는 이 밖에 BKL 이 취한 구체적인 소송전략이나 서면 구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.

구체적으로,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50 여 일이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, ②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의견 제출 및 조기결정신청 등 과세처분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이익을 가지는 점, ③ 과세관청은 단일한 행정주체이므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사이의 과세자료 수보 지연이나 업무분장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.

또한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3 항 제 3 호는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 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한 것일 뿐

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며, 대법원 2025. 2. 13. 선고 2023 두 41659 판결에 비추어 이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사유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.

3. 대상판결의 요지

서울행정법원은 2026. 1. 15. 선고 2024 구합 77082 판결에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보다 앞서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는데, 과세예고통지와 처분이 같은 날 이루어져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.

서울고등법원은 2026. 8. 20. 선고 2026 누 3481 판결에서 과세예고통지와 처분이 같은 날 이루어지고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되기까지 하였다면,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먼저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사후에 불복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. 또한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자료 수보가 지연된 것은 과세관청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,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50 여 일이 남아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과 다르지 않고, 이를 생략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. 이로써 제 1 심의 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.

4. 시사점

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1 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납세자에게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본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이러한 절차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,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에 '미리'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.

또한 본 판결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사이의 과세자료 수보 지연 등 과세관청 내부 사정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실무적으로는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의 발송일 및 송달일,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,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처분까지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절차적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 사건의 소송 전략은 BKL 조세그룹의 강석규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였고 안현국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맡아 헌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
관련 구성원

강석규

변호사

T 02.3404.0653

E seogkyoo.kang@bkl.co.kr

안현국

변호사

T 02.3404.7471

E hyunkook.ahn@bkl.co.kr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